

2023학년도 교내 장학금별 지급기준

□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(생활비성)

장학금명	지급기준	제출서류												
보호시설퇴소자 장학금	○ 지급대상 :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(구.보호종료아동) 또는 보호(연장)아동에 해당하는 재학생 -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대상자 지급 * 자립준비청년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* 보호아동 : 대학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(연장)아동 ○ 성적기준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 ○ 지급금액 : 금300,000원	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 ② 해당자 증빙서류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증빙서류</th><th>서류 발급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보호(연장)아동</td><td>아동복지시설 - 입소사실 확인서 -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사본)</td><td>아동복지시설</td></tr> <tr> <td>가정위탁</td><td>- 가정위탁보호 확인서</td><td>시·군·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/td></tr> <tr> <td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</td><td>- 보호종료확인서</td><td>(' 20.9.30. 이전 보호종료) ☞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(' 20.10.1. 이후 보호종료) ☞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/td></tr> </tbody> </table> * 「아동복지법」 상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 4곳에 한함	구분	증빙서류	서류 발급처	보호(연장)아동	아동복지시설 - 입소사실 확인서 -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사본)	아동복지시설	가정위탁	- 가정위탁보호 확인서	시·군·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	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	- 보호종료확인서	(' 20.9.30. 이전 보호종료) ☞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(' 20.10.1. 이후 보호종료) ☞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분	증빙서류	서류 발급처												
보호(연장)아동	아동복지시설 - 입소사실 확인서 -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사본)	아동복지시설												
가정위탁	- 가정위탁보호 확인서	시·군·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	- 보호종료확인서	(' 20.9.30. 이전 보호종료) ☞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(' 20.10.1. 이후 보호종료) ☞ 읍면동 행정복지센터												
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	○ 지급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재학생 -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대상자 지급 ○ 성적기준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 ○ 지급금액 : 금300,000원	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 ② 해당자 증빙서류(아래 중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) •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외국인 사실확인서(외국인등록증) • 부모가 귀화한 경우 : 기본증명서(상세)												
6.25 UN참전 용사 후손 장학금	○ 지급대상 :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국적으로, 6.25 UN참전국* 참전용사 후손인 재학생 * UN참전 22개국(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, 프랑스, 그리스, 터키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태국, 필리핀, 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, 콜롬비아, 인도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, 이탈리아, 서독) ○ 성적기준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성적 2.6이상 ○ 지급금액 : 금300,000원	① 공통서류(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) ② 해당자 증빙서류 • 참전용사 증명서 • 참전용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* * 국가보훈처 개최 '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' 수료증 대체 가능												

※ 증빙서류는 2023. 7. 1.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.